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391호 2013. 8. 21(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3-94호 군계획시설사업(한국승강기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3-926호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4
- 거창군 공고 제2013-934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164호선외 3개 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11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3-14호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9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고시 제2013 - 94호

## 군계획시설사업(한국승강기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 1992-465호(1992.12.24)호로 결정된 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3. 08. 19

### 거창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
- 명칭 : 한국승강기대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변경없음) : 56,525㎡

나. 변경내용 - 기숙사 명칭 변경 : 생활관 → 제1기숙사

- 제2기숙사(증축) : 건축면적 868.98㎡, 건축연면적 7,595.16㎡

다. 세부내용(조성계획변경)

<기정>

구분	시설면적(㎡)	구성비(%)	비고
총면적	56,525	100.0	
교육시설	8,146	14.3	
지원시설	7,490	13.3	
운동시설	11,274	20.0	
주차장	6,780	12.0	
광장	1,260	2.2	
도로	7,580	13.4	
녹지	13,650	24.2	
하천	345	0.6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건물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규모	비고
교 기 시 육 본 설	1	본관동	2,828.0	5.0	819.69	2,391.01	지상3층	
	2	제1공학관	2,083.0	3.7	1,471.24	2,673.98	지상2층	
	3	제2공학관	1,826.0	3.2	1,565.73	3,945.97	지상3층	
	4	창조관	683.0	1.2	570.44	2,383.98	지하1층 지상4층	
	5	실습동	3,068.0	5.4	506.01	2,609.35		
	6	도서관	2,802.0	5.0	1,395.63	4,698.36	지상4층	
	7	연구동	701.0	1.2	370.90	717.60	지상2층	
	8	에스컬레이터 실습동	545.0	1.0	371.28	371.28		
	소 계			14,536.0	25.7	7,070.92	19,791.53	
지 시 원 설	9	복지후생관	1,381.0	2.4	725.53	1,724.03	지하1층 지상2층	
	10	기숙사	4,904.0	8.7	2,268.76	11,707.50		금회변경
	10-1	제1기숙사			1,399.78	4,112.34	지상3층	명칭변경
	10-2	제2기숙사			868.98	7,595.16	지하1층 지상8층	증축
	11	민원실	93.0	0.2	33.93	33.93	지상1층	
	소 계			6,378.0	11.3	3,028.22	13,465.46	
기 시 타 설	12	운동장	7,864.0	13.9				
	13	농구장	931.0	1.7				
	14	테니스장	1,421.0	2.5				
	15	광 장	1,415.0	2.5				
	16	도로 및 주차장	14,129.0	25.0				
	소 계			25,760.0	45.6			
녹 지	17	녹 지	9,851.0	17.4				
합계			56,525.0	100.0	10,099.14	33,256.9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3. 08. 20
- 준공 예정일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거창군이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추진본부 설치 등(안 제4조)

-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1. 기초질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절거창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립1004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추진본부 구성 및 위촉(안 제5조)

- 본부의 목적에 공감하는 각계·각층의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의식개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라. 추진본부 권한 및 운영(안 제19조~25조)

- 추진본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추진본부의 위원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군수는 추진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82] 또는 E-mail[whdydndjs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이하“추진본부”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단체 및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 추진본부 운영 등 의식개혁운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추진본부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이란 본부장, 위원장 등 추진본부 사무를 이끌어 가고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 “추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기관·단체 등을 대표하는 추진본부의 구성원을 말하며, 임원진도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추진본부 설치 등

제4조(추진본부 설치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본부를 둔다.

1. 기초질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절거창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림 1004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세부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질서 운동 : 질서, 환경, 안전운동
2. 친절거창 운동 : 친절, 예절운동
3. 아림 1004운동 : 모금, 나눔, 칭찬운동

**제5조(구성 및 위촉)** ① 추진본부는 본부의 목적에 공감하는 각계·각층의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의식개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② 추진본부는 본부장과 분야별 추진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 100명 이상 2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 3인의 공동대표로 구성하고 분야별 추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초질서, 친절거창, 아림1004분야 추진에 적합한 인사 3인으로 구성하되 총회 시 호선으로 선출하며 사무총장 및 분야별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제6조(본부장 및 위원장)** ① 본부장은 추진본부를 대표하고 추진방향을 정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분야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추진본부의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제7조(사무총장 및 국장)**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추진본부장 및 분야별 국장단에게 보고한다.

1.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2. 각종행사 총괄 및 내부갈등 조정
3. 기타 추진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③ 국장은 각 분과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행사를 총괄하되 그 결과를 추진위원장 및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 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전출, 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경 될 때까지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① 추진본부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주관은 사무총장이 한다.
- ② 협의회는 추진본부에 상정할 안전에 대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각 분야별 추진위원장 및 사무국장 되며, 필요시 해당 분야별 관계공무원을 참석 시킬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분야별 위원회)** 추진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추진본부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승계)** ①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장은 본부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추진본부의 회의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추진본부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추진본부는 분야별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의에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의사정족수)

① 추진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① 추진본부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본부장은 본부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추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추진본부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의 공개) 추진본부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본부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장 추진본부의 권한 및 운영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추진본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추진본부의 위원인 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추진본부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추진본부 위원인 해당 기관·단체는 추진본부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본부가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추진본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추진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본부의 운영비와 회의수당
2.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3조(정산) 본부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본부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의식개혁운동과 관련 있는 추진사업의 일부를 추진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의 3개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의 3개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 08. 20.

## 거창군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677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226번지 일원)	거고25호 (‘02.06.10)	2013.08.~ 2015.06.30
	도시계획도로 (소로3-165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5	165	6.0	1,258	거창읍 동변리 (1160-30번지~226번지 일원)	거고25호 (‘02.06.10)	2013.08.~ 2015.06.30
	도시계획도로 (소로2-102호선)	거창	가지	소로	2	102	220	8.0	2,092	거창읍 가지리 (299-1번지~349-10번지 일원)	경고103호 (‘78.03.20)	2013.08.~ 2015.06.30
	도시계획도로 (소로3-42호선)	거창	서변	소로	3	42	348	6.0	2,744	거창읍 서변리 606-1번지~동변리 98-1번지	경고465호 (‘92.12.24)	2013.08.~ 2015.06.30

### 2. 사업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3-16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4,526	1,677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제 준			
2	거창읍 동변리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거창읍 동변리	514-1	대	182	57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제 준			
4	거창읍 동변리	514-3	도	56	5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제 준			
5	거창읍 동변리	512-2	대	128	54	부산진구전포동362-64 한라비발디102동1802호	표 영 준			
6	거창읍 동변리	511-1	도	131	131		거 창 군			
7	거창읍 동변리	512-1	대	259	17	부산진구전포동362-64 한라비발디102동1802호	표 영 준			
8	거창읍 동변리	511	대	344	74	거창읍 동변리 73	배 오 성			
9	거창읍 동변리	211	대	445	35	거창읍 동변리 471	표 재 성			
10	거창읍 동변리	205	대	122	25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4-1	신 총 범			
11	거창읍 동변리	211-1	도	72	61		거 창 군			
12	거창읍 동변리	210	대	301	28	거창읍 동변리 200	염 익 환			
13	거창읍 동변리	209	대	393	70	거창읍 동변리 209	표 복 남			
14	거창읍 동변리	213-1	도	27	21		거 창 군			
15	거창읍 동변리	213	대	165	23	거창읍 동변리 213	박 성 근			
16	거창읍 동변리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17	거창읍 동변리	215-2	대	605	151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18	거창읍 동변리	216	대	740	6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19	거창읍 동변리	215-1	대	437	4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20	거창읍 동변리	227	대	1441	215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로6 주공아파트202동204호	표 병 수			
21	거창읍 동변리	227-1	도	126	86	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로6 주공아파트202동204호	표 병 수			
22	거창읍 동변리	226-2	도	34	23		거 창 군			
23	거창읍 동변리	226	전	1546	140	거창읍 동변리 255	이 종 길			

○ 소로3-16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5,637	1,258					
1	거창읍 동변리	1160-4	구	1132	36		국(건설부)			
2	거창읍 동변리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거창읍 동변리	187-3	도	30	19	거창읍 동변리 21-2	동변마을회			
4	거창읍 동변리	241	창	157	34	거창읍 동변리 237	백 영 채			
5	거창읍 동변리	188-1	도	29	29		거 창 군			
6	거창읍 동변리	240	답	330	35	거창읍 동변리 231	김 영 준			
7	거창읍 동변리	188-2	답	18	18	거창읍 동변리 192	이 종 학			
8	거창읍 동변리	240-1	도	10	10		거 창 군			
9	거창읍 동변리	188	창	122	4	거창읍 동변리 192	이 종 학			
10	거창읍 동변리	239	대	282	1	거창읍 동변리 238	이 재 순			
11	거창읍 동변리	189-1	답	484	20	거창읍 동변리 199	이 종 득			
12	거창읍 동변리	239-1	대	12	10	거창읍 동변리 238	이 재 순			
13	거창읍 동변리	190	답	80	2	거창읍 동변리 199	이 종 득			
14	거창읍 동변리	190-1	도	69	19		거 창 군			
15	거창읍 동변리	191-1	도	37	19	인천시 북구 부평동 624-22	정 판 순			
16	거창읍 동변리	235	대	190	38	거창읍 동변리 198	이 태 순			
17	거창읍 동변리	235-1	도	5	5		거 창 군			
18	거창읍 동변리	234-2	전	73	21	거창읍 동변리 198	이 태 순			
19	거창읍 동변리	191	대	254	2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5길 6-11(황학동)	표 성 헌			
20	거창읍 동변리	234-4	도	6	6		거 창 군			
21	거창읍 동변리	192	대	344	30	서울 중구 황학동 112	김 태 옥			
22	거창읍 동변리	234-1	전	147	50	거창읍 동변리 193-2	이 익 순			
23	거창읍 동변리	192-1	도	10	10		거 창 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4	거창읍 동변리	234-3	도	5	5		거창군			
25	거창읍 동변리	233-1	도	3	3		거창군			
26	거창읍 동변리	233	대	413	17	거창읍 동변리 193-2	이익순			
27	거창읍 동변리	193-2	대	529	6	거창읍 동변리 193-2	이익순			
28	거창읍 동변리	193-4	도	7	7		거창군			
29	거창읍 동변리	193-1	대	249	54	거창읍 동변리 471	표봉대			
30	거창읍 동변리	231-1	대	497	19	대구 달서구 용산동 890-5	구경숙			
31	거창읍 동변리	193-3	도	68	68	거창읍 동변리 471	표봉대			
32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창군			
33	거창읍 동변리	194	대	136	45	거창읍 동변2길 27	신인성			
34	거창읍 동변리	194-1	도	19	19		거창군			
35	거창읍 동변리	195	대	126	63	거창읍 동변2길 27	신인성			
36	거창읍 동변리	195-2	도	20	20		거창군			
37	거창읍 동변리	227	대	1441	15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6 주공아파트 202동204	표병수			
38	거창읍 동변리	227-1	도	126	2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6 주공아파트 202동204	표병수			
39	거창읍 동변리	226-2	도	34	5		거창군			
40	거창읍 동변리	226	전	1546	31	거창읍 동변리 255	이종길			

○ 소로2-10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3,923	2,092					
1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300-1	도	56	44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301-2	대	205	65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43-4 롯데캐슬아이비102-2004	이순례			
4	거창읍 가지리	301-1	대	93	52	거창읍 가지리 304	정권수			
5	거창읍 가지리	302	대	60	35	거창읍 가지리 302	이수룡			
6	거창읍 가지리	1719-9	도	3130	597		국(건설부)			
7	거창읍 가지리	303	대	228	58	거창읍 가지리 286	정해수			
8	거창읍 가지리	292-3	대	288	97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9	거창읍 가지리	304	대	373	14	거창읍 가지리 304	김수길			
10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4	거창읍 가지리 324	명륜학원			
11	거창읍 가지리	304-1	도	34	34	거창읍 가지리 304	김수길			
12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40	2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13	거창읍 가지리	305-1	대	215	89	창원시 안민동 197 대동청솔@105-1201	이상학			
14	거창읍 가지리	289-2	대	360	3	거창읍 가지리 289-2	윤수재			
15	거창읍 가지리	305-2	대	94	5	통영시무전동1054-2 한진로즈힐비치103-1202	박훈			
16	거창읍 가지리	288-3	대	397	21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17	거창읍 가지리	305-3	전	38	35	통영시무전동1054-2 한진로즈힐비치103-1202	박훈			
18	거창읍 가지리	288-4	대	53	36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19	거창읍 가지리	287	대	192	2	거창읍 가지리 287	최희자			
20	거창읍 가지리	349-14	임	358	180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21	거창읍 가지리	349-9	임	1521	310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22	거창읍 가지리	285	전	4175	96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23	거창읍 가지리	349-10	전	1944	302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 소로3-4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1,763	2,774					
1	거창읍 서변리	606-1	도	66	3		국(건설부)			
2	거창읍 서변리	627-2	대	69	28		거창군			
3	거창읍 서변리	606-4	대	18	14		거창군			
4	거창읍 서변리	628-3	대	46	42	거창읍 서변리 628	오강석			
5	거창읍 서변리	606	대	76	25	거창읍 서변리 630	오강석			
6	거창읍 서변리	628	대	532	6	거창읍 서변리 628	오강석			
7	거창읍 서변리	626	대	214	87	거창읍 서변리 629	송동호			
8	거창읍 서변리	626-1	도	47	8	거창읍 서변리 629	송동호			
9	거창읍 서변리	727	대	156	55	거창읍 서변리 727	문복순			
10	거창읍 서변리	726-2	대	7	7		거창군			
11	거창읍 서변리	726-1	도	49	21		거창군			
12	거창읍 서변리	694-1	도	10	7		거창군			
13	거창읍 서변리	728	대	202	35	거창읍 서변리 728	박범기			
14	거창읍 서변리	694	대	172	6	거창읍 서변리 694	오태석			
15	거창읍 서변리	728-1	도	8	8	거창읍 서변리 728	박범기			
16	거창읍 서변리	695	대	391	43	거창읍 서변리 695	박구성			
17	거창읍 서변리	725-2	대	103	21	거창읍 서변리 630	표주일			
18	거창읍 서변리	1173-1	도	6739	472		국(건설부)			
19	거창읍 서변리	725-4	도	8	8	거창읍 서변리 630	표주일			
20	거창읍 서변리	695-1	도	16	6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1	거창읍 서변리	724	대	276	18	거창읍 서변리	이 재 영			
22	거창읍 서변리	700	대	162	22	거창읍 서변리 672	백 계 순			
23	거창읍 서변리	723	대	389	18	소만주공아파트 101동1106호	오 세 옥			
24	거창읍 서변리	700-1	도	33	33	거창읍 서변리	신 분 이			
25	거창읍 서변리	723-1	대	250	18	거창읍 서변리 723	이 영 선			
26	거창읍 서변리	701-1	도	9	9	거창읍 서변리 723-1	오 대 근			
27	거창읍 서변리	722-1	대	49	49	서울 관악구 남현동 492-34	박 종 석			
28	거창읍 서변리	701	대	374	10	서변리 723-1	오 대 근			
29	거창읍 서변리	701-2	도	27	2	서변리 723-1	오 대 근			
30	거창읍 서변리	704-1	도	10	9	거창읍 서변리	정 조 섭			
31	거창읍 서변리	721	대	310	36	거창읍 서변리 722	백 정 기			
32	거창읍 서변리	704	대	278	3	서변리 725-1	김 판 순			
33	거창읍 서변리	705-1	도	4	4	거창읍 서변리 699	민 태 현			
34	거창읍 서변리	705	대	9	2	거창읍 서변리 699	민 태 현			
35	거창읍 서변리	706-1	도	19	19		거 창 군			
36	거창읍 서변리	706	대	57	2	거창읍 서변리 712	오 준 석			
37	거창읍 서변리	720	대	245	24	부산 연제구 거제동 867-5 화랑@시동103호	김 옥 순			
38	거창읍 서변리	720-1	도	6	4	부산 연제구 거제동 867-5 화랑@시동103호	김 옥 순			
39	거창읍 서변리	739-4	도	8	1	거창읍 서변리 723	오 성 환			
40	거창읍 서변리	712	대	198	23	거창읍 서변리 712	오 준 석			
42	거창읍 서변리	739-1	대	489	7	서변리 739-1	해주오씨전서공파 지참고성변리문중			
43	거창읍 서변리	719-1	답	72	40	거창읍 서변리 618	이 현 태			
44	거창읍 서변리	717-1	도	12	12		거 창 군			
45	거창읍 서변리	717	대	181	36	거창읍 서변리 730	김 읊 생			
46	거창읍 서변리	718-1	답	390	17	거창군 거창읍 하동	민 정 이			
47	거창읍 서변리	717-2	대	134	15	거창읍 서변리 723	이 영 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48	거창읍 서변리	740-5	구	423	3		국(농수산부)			
49	거창읍 서변리	1167-5	구	783	53		국(농수산부)			
50	거창읍 서변리	649-1	제	387	11		국(건설부)			
51	거창읍 서변리	648-2	제	102	50		국(건설부)			
52	거창읍 동변리	145	도	848	19		국(농수산부)			
53	거창읍 동변리	1167-2	도	234	20		국(건설부)			
54	거창읍 동변리	104	답	707	188	거창읍 서변리 715	박철구외1인			
55	거창읍 동변리	109	전	251	22	거창읍 서변리 699	민 태 현			
56	거창읍 동변리	108	전	221	109	거창읍 서변리 713	오 차 술			
57	거창읍 동변리	107	전	235	63	울산 북구 화봉동 452 동아@107-405	김 중 근			
58	거창읍 동변리	106	전	218	59	거창읍 서변리	이 동 운			
59	거창읍 동변리	105	대	479	143	거창읍 서변리 677	박 범 근			
60	거창읍 동변리	103	전	231	126	거창읍 서변리 691	이 재 호			
61	거창읍 동변리	102	전	278	45	거창읍 서변리 677	박명규외1인			
62	거창읍 동변리	101	전	473	157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236-2	이풍재외3인			
63	거창읍 동변리	100	전	436	128	부산 수영구 망미동 265-15	박구호외2인			
64	거창읍 동변리	99	전	678	170	거창읍 서변리 694	오 태 석			
65	거창읍 동변리	98-2	전	1428	11	거창읍 동변리 231	김 영 준			
66	거창읍 동변리	98-1	제	86	6	거창읍 동변리 231	김 영 준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0), FAX(055-940-3579), E-mail : hds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입 법 예 고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9 일

### 거 창 군 의 회 의 장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 8.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조례안명

-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 다. 실태조사(안 제6조)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군수는 군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 5. 입법예고기간 : 2013. 08. 19. ~ 2013. 08. 24.(5일간)

###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7. 의견제출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실/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 / 전화 055-940-8073, Fax 055-940-80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거창군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첨부 :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

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과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향 과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방안
5.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참고자료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